

한방 칼럼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지난호에서 계속됩니다.>

■ 아토피 동반 증상

1. 기초 체온 조절력 저하로 인한 증상
뜨거운 것을 잘 먹지 못한다.
추위나 더위를 잘 타다
열이 얼굴로 오르는 상열증이 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이 되면 열이 오른다.
손발과 아랫배가 찬 편이다.
환절기에 증세가 심해진다.

2. 면역기능 이상으로 인한 증상

감기에 잘 걸린다.
염증질환이 잘 낫지 않는다.
알레르기질환 및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
피부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오래 간다.
임파절 부위가 잘 붓는다.
류마티즘, 원형탈모, 갑상선과 같은 면역질환이 있다.
입안이나 입가에 구내염, 구각염이 잘 생긴다.

3. 장기능과 해독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있다.
특정 음식(인스턴트, 육류, 튀김, 우유, 땅콩, 갑각류)에 과민 반응이 있다.
변비 증세가 심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고 방귀 냄새가 독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4. 심, 폐 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

비염, 천식 증세가 있다.
목이 자주 붓는다.



5. 피부 또는 점막 기능 이상으로 인한 증상

피부 습진, 건선, 알레르기 결막염, 접촉성 피부염
피부가 건조하고 윤기가 없고 각질이 많이 발생한다.
땀이 잘 나지 않는다.

6.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짜증을 잘 낸다.
불면증, 얇은 수면, 다몽, 자주 깬다 같은 수면 장애가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
인내심이 부족해 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면 피부 증세가 더 심해진다.
불안하다.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없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
과식, 폭식, 야식을 잘한다.
소화는 잘 되지만 배가 자주 고프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이 늦거나 작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큐베델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최근 이민국의 심사 경향 (2)

최근 이민국의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레 겁을 먹고 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 신청 등을 미루고 있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합리적인 법의 지 (rule of law)를 받는 나라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이민국도 케이스를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 중심으로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취업이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은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와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미 노동청의 승인을 받는 펄시스템을 통한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노동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광고 기간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기간에 받은 이력서를 잘 보관하고 이력서 관련 인터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민국에 대한 신청절차(I-140/I-485)도 법규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1. 변호사 비용

취업영주권 첫 단계부터 법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펄단계의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연방법 규정 20 C.F.R. 656.1에 따르면 펄과 관련된 모든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변호사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법을 지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영수증/인보이스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분야이므로 가능하면 변호사 비용은 꼭 회사 체크로 지불하고 인보

이스를 받기 바랍니다.

2. I-140/I-485 신청 시 유의점

먼저 회사의 지불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취업이민 첫 단계 결정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을 1) 회사의 순이익 2) 순자산 3) 현재 그 적정임금을 지불하고 있거나 증거 (H-1B, E-2 고용인 등으로 회사에 위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을 통해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최근의 회사 세금 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s 등으로 정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485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 조건 즉, 학위나 경력의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학위는 졸업장,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미국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credential evalu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또 경력의 경우는 단순히 재직증명서만으로는 경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 재직 시 직종, 업무내용이 모두 기입된 재직증명서를 전 직장과 조율을 해 받도록 하고, 재직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증명 등도 함께 준비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합법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십시오. 학생 신분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수료증, 졸업장, 성적표, 송금기록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E-2의 경우는 사업체 세금보고서를 준비하고 H-1B/J-1등의 경우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기록, W-2, 세금보고서, paystub등을 잘 준비하십시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전문업체



하시마 건축

HASHIMA CONSTRUCTION INC

물, 화재, 천재지변 보험 크레임 및
수리, 리모델링 일체 통합 서비스

Terry Joe (Mr. 조) 714.745.5958